

(주)하림산업 함열식품2공장 3F 입출고 물류흐름 및 연결컨베이어 개조공사

계약서

1. 공 사 명	(주)하림산업 함열 2 공장 3F 입출고 물류흐름 및 연결컨베이어 개조공사		
2. 사업부지	전북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78 길 137		
3. 세부계약물품	(VAT 미포함)		
	품명	수 량	금 액 (원)
	입출고 물류 흐름 및 연결컨베이어 개조 공사	1	208,000,000
	합계		208,000,000
4. 계약 기간	계약 체결일 로부터 ~ 2024 년 04 월 30 일까지		
5. 공사완료기준일	2024 년 03 월 30 일		
6. 계약금액	일금 이억팔백만원정 (₩208,000,000/VAT 미포함)		
7. 계 약 금	계약금액의 30% (선급금보증증권, 계약이행보증증권 先 제출)		
8. 중 도 금	계약금액의 60% (설비입고 및 단동테스트 완료 후)		
9. 잔 금	계약금액의 10% (시운전 시생산 합격 승인 후) -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先 제출		
10. 계약이행보증보험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10%	
11. 선급금보증보험	보증금액	계약금액의 30%, 계약기간 동안 보증	
12.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보증금율	계약금액의 10%	
	하자담보책임기간	24 개월	
특기사항 1) 계약에 필요한 모든 보증보험증권은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증권에서 발행한 보험증권으로 제출한다.			

- 2) "수급인"은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선급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선급금보증증권을 각각 先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증권)
- 3) "수급인"에게 어음거래정지, 회생절차개시신청, 파산, 해산, 청산, 법정관리신청,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 신용상의 중대한 흠결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위에 관하여 "수급인"과 "도급인" 간에 별첨 "계약일반조건", "제안서에 포함된 설계도" 및 "현장설명시방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본 계약서 및 관련문서 2 통을 작성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

2023 년 월 일

붙임서류 :

1. 계약일반조건 1부.
2. 확인서 1부
3. 설비시방서 1부.
4. 최종견적서 1부.
5. 안전관리 Work Scope 1부
6. 윤리경영실천서약서 1부
7. 비밀유지 계약서 1부
8.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도 급 인

상 호 : 주식회사 하림산업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 121, 2층
(마동, 하림지주사옥)

대 표 자 : 민 동 기 (인)

수 급 인

상 호 : (주)에스에프에이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9길 25(영천동)

대 표 자 : 김 영 민 (인)

(주)하림산업 함열식품2공장 3F 입출고 물류흐름 및 연결컨베이어 개조공사 계약일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발주처(이하 "도급인"이라고 한다)가 시공자(이하 "수급인"이라고 한다)에게 의뢰하는 목적물의 제작 및 시공에 관하여 "도급인" 과 "수급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이라 함은 설비공사를 설비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설비공사를 완성할 것으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인"으로부터 설비공사를 도급 받는 설비업자를 말한다.
4.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설비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5.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6. "설계도서"라 함은 현장설명서, 설계도면(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시방서, 조사보고서, 공사 내역서, 각종 인허가자료 등 견적과 관련하여 "도급인"이 제공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각각의 서류는 상호 보완의 의미를 가지며 "수급인"은 모든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각각의 설계도서 상의 성능을 만족시켜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도서상 상호간 다르거나 상충되는 사항은 반드시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시공하며, 성적서를 제출하여 "도급인"에게 승인 후 시공한다.
7.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8. "산출내역서"라 함은 물량내역서에 "수급인"이 단가를 기재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9. "공사완료기준(예정)일"이란 공사 관련행위 및 최종공사를 완료하고 제27조의 전체 항목과 공종별 Punch List를 완료한 후, 인수인계를 완료한 시점을 말한다.
10. "공사성민원(공사관련민원)"은 주변 민원인이 공사 시공관련 행위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등 주변 민원인의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를 사유로 하여 제기하는 민원을 말한다.
11. "사업성민원"은 공사성민원 이외의 사업추진으로 인한 주변 민원인이 제기하는 민원을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 ① 계약문서는 인허가 관청의 허가조건,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현장설명서, 설계도서, 시방서, 계산서, 계약내역서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된다.
- ②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③ 본 사업 계약문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인허가관청의 허가조건
 2. 공사도급계약서
 3. 현장설명서
 4. 공사도급계약일반조건
 5. 계약내역서 및 실시설계도서, 시방서, 각종 계산서
 6. 표준시방서 및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제4조[계약이행의 보증]

- ① "수급인"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본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도급인"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4. 국채 또는 지방채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 ① 제3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 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도급인"은 제35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수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 감독원(담당자)]

- ① "도급인"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를 관리·감독하거나, 감독원으로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와 자금의 계획 및 집행을 위해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 관리감독 및 공사추진을 위한 공사감독원을 지정하여 공사현장을 관리감독 및 감리케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원 및 도급인 또는 관리자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공사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원의 공사와 관련한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수급인"에 대한 지시·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사용승인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5.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도급인"이 위임하는 일
- ③ "수급인"은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시에는 "도급인"과 "공사감독원"이 협의하여 수급인의 현장대리인 및 해당 공종별 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즉각 응하고 조치 내용을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 ④ "도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원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현장 대리인 및 현장요원]

- ① "수급인"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제8조에서 정한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으로 선정하여 "도급인"에게 현장대리인계를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② "수급인"은 공사착공 후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을 변경 시 도급인과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서 제8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 변경하여 "도급인"에게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③ "도급인"은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이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불미스러운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 ④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수급인"을 대리하여 공사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도급인” 및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은 공사현장을 이탈 시 미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⑤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의 귀책사유 있는 행위로 인하여 “도급인”이 입게 되는 손해 및 “도급인”이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의 자격]

- 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현장대리인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 1. 업무시설 또는 유사프로젝트 신속 시공 경력자로서 공사추진 및 관리 능력이 있는 자.
 - 2. 대내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법령의 규정 또는 “도급인”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을 대리하며,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한다.
- ③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
- ④ “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인”이 해당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⑤ “수급인”은 제4항에 의하여 교체된 근로자를 “도급인”의 동의 없이 해당 공사를 위해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9조[공사의 착공 및 시공]

- ① “수급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공계획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 착공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한다. 착공계획서 제출의 지체 또는 보완으로 인하여 공사의 착공이나 그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착공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1. 현장직원조직도(직원투입계획)
- 2. 현장대리인 및 현장투입 직원의 경력확인서
- 3. 주요공정 시공계획서(주간 단위 계획)
- 4. 안전, 환경, 시험, 품질보증관리계획서
- 5. 전체 공사에정공정표(공정률 포함, 사용승인 예정일 및 공사완료일 포함)
- 6. 공사비 산출내역서 (단,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액을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7. 각종 주요자재 반입 및 설치 계획

8. 기타 "도급인"이 지정한 사항

- ②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 및 변경사항을 "도급인"에게 통보하여 "도급인"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도급인"이 지정한 감독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은 "도급인"의 변경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를 완성하여야 한다.
- ⑤ "수급인"은 본 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도급인"이 제공한 설계도서상의 하자, 모순, 누락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설계서상의 목적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정상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 후 "도급인"에게 적합한 설계의 제시와 함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서면으로 "도급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⑥ "수급인"은 공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또는 "도급인"이 요청한 경우 세부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도급인"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⑦ "도급인"은 "수급인"이 현장설명서, 설계도면, 시방서 등 계약문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 및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⑧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된 시공상의 필요한 인·허가 등 업무를 "도급인"을 대리하여 수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단, "도급인"의 의무 또는 책임사항과 관련된 대관 인·허가 등 업무는 "도급인"이 수행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이로 인한 공사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⑨ "수급인"은 공사 진행 시 전 공정 및 준공에 필수적인 공사용 기록사진, 물품 및 자료, 각종 표지판, 기기시험 등 제반 시험 및 시험성적서류, 설비용량계산서,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폐기비용 등의 요금을 부담한다.
- ⑩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본 공사에 대한 계약목적물을 인계하여야 한다.
- ⑪ "수급인"은 본 공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공사현장 및 공사범위에 대해 충분히 답사 및 조사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본다. "수급인"은 착공 후 공사현장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공정의 지연 또는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기타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⑫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장대리인이 직접 설명하는 "공사착수보고회(Kick-off Meeting)"를 개최해야 한다. (개최시기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1. 일반사항 : 공사개요, 현장관리방침(품질,안전,조직관리 등)
 2. 현장여건 조사결과
 3. 공사 및 설치계획 등 전체 Follow-up 공정표
 4. 본사의 현장지원 방안 등 현장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10조[공사기간]

- ① 착공일은 계약일을 말하며, 공사완료일은 제2조 제9호에서 정하는 "공사완료기준일"을 말한다.
- ②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현장 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수급인"은 본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마무리 공사 등 통상의 시공범위에 포함된 공사와 건물의 구조 및 기능 또는 관련법규 상 통상 시공이 필요한 부분은 이를 시공하여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공사 중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추가공사 발생 시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④ "수급인"은 공사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원 및 준공도면 등을 "도급인"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고 서면으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⑤ "수급인"은 제4항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였을 때는 공사기간 내에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제11조[공사대금의 지급]

공사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며 각 내역은 아래 각 호에 정한 바 와 같다.

- ① 계약금
 1. "수급인"은 계약체결이후 15일 이내에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수급인"의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제4조 제2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선급금보증보험증권",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先 제출하여야 하고, "도급인"의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지연된 경우 그 사유 및 지급시기를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 지급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계약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타 목적으로 사용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도급인"은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중도금 : 설비입고 및 단동테스트 완료 후 60%

③ 잔금(준공금)

1. "수급인"의 시운전 및 시생산 합격 후 10%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도급인"이 계약한 시공사가 시운전 및 시생산 합격 승인을 득하고 "수급인"이 소정의 하자이행증권이 예치된 후 계약금액의 10%를 잔금으로 "수급인"이 동의한 "도급인"의 지급조건(현금)에 따라 지급한다.
3. "수급인"은 사전에 "도급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서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자재, 장비의 검사, 시험 및 발주관리 등]

- ①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설비 및 정보시스템은 현장설비시방서 기재의 내용에 적합하여야 하고, 현장설명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자재에 KS제품 이상으로 품질, 품목, 규격은 설계도서(제안서에 포함)와 일치하여야 한다.
- ② 공사에 사용할 자재 중에서 "도급인"이 품목을 지정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사용전에 "도급인"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급인"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④ "수급인"은 "도급인"이 지정 및 공급하는 자재를 제외하고는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 설비, 장비, 모든 사항 등을 "수급인"이 자체적으로 조달하여 시공하고 현장설명시방서 및 설계도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걸쳐 "도급인"의 요구에 따라 시공한다.
- ⑤ "수급인"은 시공 전에 자재의 변질, 변형, 손상 기타 기능상 하자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자재라도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⑥ "수급인"은 자재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⑦ "수급인"이 불합격된 재료를 즉시 반출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급인"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재료를 반출하거나 대품으로 대체 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 ⑧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 조립 검사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도급인"의 입회 하에 그 조립 검사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 ⑨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준공 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도급인"의 참여 없이 시행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도급인"의 서면승인을 받고 사진, 비디오 등으로 시공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다.
- ⑩ "수급인"은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도급인"이 정하는 공사 감독원의 근무일 내에 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⑪ "수급인"은 착공 후 2개월 이내에 장비 및 주요자재 발주관련 전 과정이 기록된 세부 발주계획서를 제출하여 "도급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공정진행에 따른 변동사항이 발생시 정기적으로 보완 후 "도급인"에게 제출한다.
- ⑫ "수급인"은 "도급인"이 지정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지정된 공종 공사 착수 전 도급인이 지시하는 바에 의하여 현장 또는 "도급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Sample 시공(Mock Up 포함)을 하여 "도급인"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⑬ "수급인"은 본 건물의 적법한 사용승인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및 각종 시험, 검사 등을 "수급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⑭ "수급인"이 제12조 ①~⑬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수행할 경우 "도급인"은 부실공사로 인정하여 하자로 처리할 수 있고, 해당 부분에 대한 기성 부분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13조[지급자재와 대여품]

- ① 계약에 의하여 "도급인"이 지급하는 자재와 대여품은 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인도되어야 하며, 그 인도장소는 시방서 등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자재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도급인"의 서면승낙없이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지급자재와 대여품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이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 ④ "수급인"은 지급자재 및 대여품의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도급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자재 등의 지급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인"의 서면승낙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인"은 대체 사용한 자재 등을 "수급인"과 합의된 일시 및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사용당시의 가격을 지체없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⑥ "수급인"은 "도급인"이 지급한 자재와 기계·기구 등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⑦ "수급인"은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지급자재 또는 사용 완료된 대여품을 지체없이 "도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 및 공정관리]

- ① "수급인"은 매(주)작업인원 및 공사작업을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의 오류시정, 내용보완 등에 대한 공사 감독원의 요구나 지시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수급인"은 월별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월 말일까지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월별/공정별 공정율
 - 2. 인력, 장비, 자재, 설비 투입현황
 - 3. 공사추진 현장사진(Digital File)대장
 - 4. 안전관리비 사용현황 내역
 - 5. 하도급대금 및 노임지급 현황(통장사본 또는 입금내역 등)
 - 6. 기타 "도급인"이 지정한 서류
- ③ "도급인"은 "수급인"이 예정공정표에 명시된 공정에 비해 공사의 진행을 10%이상 지체한 때에는 "수급인"에게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④ 예정공정표에 명시된 공정에 비해 아래와 같이 공정이 지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제13조 제2항의 월별 제출 자료와는 별도로 공정만회 대책 수립과 조치를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정만회 계획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1. 주 공정 실적공정율이 계획공정율 대비 5%이상 지연되는 경우
 - 2. 월간 실적공정율이 계획공정율 대비 10%이상 지연 시

3. 지연일수가 잔여공기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⑤ "도급인" 또는 "도급인"이 선정한 공사 감독원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에게 지시할 수 있다.
- ⑥ "도급인" 또는 "도급인"이 선정한 공사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공사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공사 현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조치를 위하여 명백히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의 경우 "수급인"이 임시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
- ⑦ "도급인" 또는 "도급인"이 선정한 공사 감독원은 제6항의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급인"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 기간을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키는 경우 "수급인"은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 ⑨ "수급인"은 매 공정 별 자료를 "도급인" 및 "도급인"이 지명한 자에게 각2부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 전 현황, 일정 기간별 현장 진행 현황 사진)

제15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 ① "수급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이 이를 위한 안전관리비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상당액을 포함한 것임을 인정한다. "수급인"은 전술한 산업재해에 대비한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험증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6조의 3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 및 산업재해와 "수급인" 및 하도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④ "수급인"의 시공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 시 발생한 안전사고는 "수급인"에게 책임이 없다. 단 전체 현장의 안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도 안전상의 책임을 진다.

- ⑤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해 공사종사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보관하며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⑥ "수급인"은 공사수행에 수반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 책임자를 포함한 별도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도급인"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각종 안전장비 및 시설을 충분히 확보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 ⑦ "수급인"은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공사수행 시 민원 및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본 건 공사 시공관련 발생한 모든 민원 및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형사상 책임, 민원 및 사고처리비용, 원상복구비 등) "수급인"에게 있다.
- ⑧ 모든 안전시설은 사전에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수급인"의 부담으로 설치 및 운영, 유지하여야 하며, 가설 기자재는 반드시 "안"자 표시가 각인된 성능 검정 품만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건설근로자의 보호 및 응급조치]

-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임금채권보장법 및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의무가입 대상인 경우에는 퇴직공제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및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제반 부금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 부담금,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며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또는 사용주로서의 책임을 진다.
- ③ "수급인"은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 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도급인"은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급인"에게 긴급 또는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도급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도급인"은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3항 및 제4항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민원처리 비용에 소요된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제17조[공사기간의 연장]

- ① "수급인"은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도급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서면 합의로 결정한다.
- ② "도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30일 이상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는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 ④ "도급인"은 제1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부적합한 공사]

- ① "도급인"은 "수급인"이 시공한 공사 중 현장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경우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도급인"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수급인"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 ① "수급인"은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또는 지급자재와 대여품에 대하여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도급인"은 본 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한 경우 "수급인"과 협의하여 그 손해 및 책임 부담범위를 결정한다.
- ③ 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사전에 서면으로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 변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물량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2. 공사비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항목의 단가는 설계변경시점을 기준으로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재정경제부 등록업체발간)와 견적서를 기준으로 "도급인"과 "수급인"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한다.
- ③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정산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설계도서 및 내역서 등을 작성 공사 감독원을 경유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도급인"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법(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최종 정산금액이 공사도급금액의 5% 이내 증가할 경우 설계변경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도급인"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 및 "수급인"이 요청하여 "도급인"이 승인한 설계변경 금액 증가는 제외)
- ④ 계약도면 별첨
- ⑤ "수급인"은 "도급인"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실행한 설계변경이나 추가시공·변경시공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추후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

제2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① 계약체결후 90일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공사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이 국가에서 발주되는 조달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가격 변동으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의 가격이 계약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내에 100분의 15 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물가변동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적용하되, 물가변동이 있는 날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 받은 날부터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① 추가공사비 정산을 목적으로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지연하거나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도급인"의 사용승인 일정에 지연을 초래하는 경우 발생한 손실은 "수급인"이 보상하여야 한다.
- ② 제20조에 의한 설계 및 시방사항의 변경에 따른 투입자재의 증감 변경 또는 시공방법의 변경 등으로 공사비용이 증감되고, 그로 인하여, 공사대금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설계 또는 시방사항의 변경을 통지하는 경우와 "수급인"의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정산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수급인"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내역서 등 필요한 관련서류 및 근거서류(물량산출서, 견적서 등)를 14일 이내에 "도급인"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수급인"은 공사도급계약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 1. 설계 및 시방사항의 경미한 변경
 - 2. "도급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는 추가공사
 - 3.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여 "도급인"의 승인 후 시행한 증액 부분
 - 4. 설계도서 및 마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를 완성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하는 증액부분
 - 5. 입찰 및 계약서류와 공사비내역서의 불일치로 인한 증액부분
 - 6.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 숙지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고 현장설명시방서에 의무사항이 명기되어 있을 때에 그 명기된

내용에 따라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7. 최종 정산금액이 공사도급금액의 5%이내 증가할 경우

(단 "도급인"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 및 "수급인"이 요청하여 "도급인"이 승인한 설계변경 금액 증가는 제외)

8. 추가 공사를 명목으로 한 합의되지 않은 일반관리비, 이윤 등 간접비

④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속히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의 하자 등 시공 시 중대한 하자가 예상되거나, 향후 건축물의 운용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사도급계약의 범위 및 조건 등이 변경될 경우

⑤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서면으로 "도급인"에게 그 변경을 요청해야 하며, "도급인"의 사전 서면동의를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도서를 변경하거나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수급인"은 사후에 변경 이력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보관하고 공사기간 중 "도급인"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

2. 불가항력에 따른 공사기간의 연장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수급인"은 제20조 및 제22조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사유 이외에 계약체결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24조[기성부분금]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도급인"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기성부분은 제2조 제8호의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진척율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 ③ "도급인"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④ "도급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손해의 부담]

"도급인"."수급인"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가 손해를 부담한다.

- 1. 목적물이 "도급인"에게 인도되기 전에 발생한 손해: "수급인"
- 2. 목적물이 "도급인"에게 인도된 후에 발생한 손해: "도급인"
- 3. 목적물에 대한 "도급인"의 인수지연 중 발생한 손해: "도급인"
- 4. 목적물 검사기간 중 발생한 손해: "도급인"."수급인"이 협의하여 결정

제26조[부분사용]

- ① "도급인"은 공사목적물의 인수 전에도 "수급인"의 공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성공사목적물이나 미완성 부분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당해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가적인 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의 공사목적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도급인"은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③ "도급인"은 제1항에 의한 사용으로 "수급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수급인"의 비용을 증가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증가된 비용을 부담한다.

제27조[준공검사 및 계약물의 인수인계]

- ① "수급인"은 관계기관의 사용승인(준공처리)을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감독원"의 준공검사를 득한 후에 "도급인"에게 준공검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도급인"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수급인"의 입회 하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수급인"은 본 조 제1항 또는 제10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수급인"은 (설비)공사시방서에 기재된 계약물품의 품질 또는 성능, 기능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수량부족 및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 "도급인"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개선된

대체품을 납품하여 시운전 및 시생산에 합격하거나 계약설비 대금을 현금 반환한다. 이때, 계약서 제30조에 의거 계약기간(준공기간) 초과로 인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에 "수급인"은 그 부족분 또는 불합격품의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⑤ "수급인"은 불합격품의 "도급인"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인수한다.
- ⑥ "수급인"은 제5항의 기간 내에 불합격품을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도급인"은 이를 "수급인"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 ⑦ 제5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후 "도급인"이 보관하는 불합격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 또는 변질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⑧ "수급인"은 불합격품, 과납품을 "도급인"의 사전동의 없이 시중 거래선에 판매할 수 없으며, "도급인"의 동의 없이 판매함으로써 "도급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
- ⑨ "수급인"은 관계기관의 사용승인(준공) 완료 후 미진한 공사에 대해 책임지고 시공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⑩ "수급인"은 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⑪ "수급인"은 "도급인"의 준공검사를 득한 후 도급 받은 공사 장소의 정리정돈과 청소를 완료하고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시키고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 "도급인"의 승인을 득한 후 "도급인"의 입회 하에 관련서류 및 인수 목록을 작성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1. As-Built Dwg. (Hard Copy A2 Size 반접 5부 및 A3 Size 5부, USB메모리 5부)
2. 공사 및 준공사진첩 3부(USB메모리 2매).
3. 자재 공급업체의 목록명세(연락처, 담당자 등) 각 3부.
4. 각종 인.허가 필증(사용승인서류 일체) 3부.
5. 각종 기기, 기구 사용 설명서, 품질보증서, 시험성적서 각 3부.
6. 작동 및 유지보수 설명서(Operation and Maintenance Manual) 3부.
7. 각종 실험 및 시험 보고서(Test and Commissioning Report) 3부.
8. 하자이행보증증권(원본)
9. "도급인"이 요청하는 기타 자료

제28조[대금 지급]

- ① "수급인"은 "도급인"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도급인"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과 사용승인서류 및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인도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폐기물의 처리]

"수급인"은 "수급인"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관계법령에 의거 "수급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사본은 "도급인"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한다.

제30조[지체상금]

- ① "수급인"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공사대금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도급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이 인정하는 사유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제19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수급인"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수급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도급인"이 인허가기관으로부터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사목적물의 해당부분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③ "도급인"은 제1항의 지체상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31조[하자담보 및 하자보수보증금]

- ① "수급인"은 "도급인"의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의 사양을 충족시켜 "도급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여야 하며 위 사양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수급인"은 공사자재, 설비, 정보시스템 또는 시공의 불량 기타 관계법규에 위반된 원인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료보수를 이행하며, 동 하자기간은 시운전완료 기준일로부터 24개월으로 한다.
- ③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도급인"에게 완료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수급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급인"은 공사대금에서 해당금액만큼 공제할 수 있다.
- ④ 공사의 하자가 "수급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는 하자보증기간 이후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⑤ 하자담보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도급인"이 지정한 기일 내에 "수급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대행시킬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따른 비용 발생 통보 접수 시 비용 지불을 하여야 한다.

제32조[설치공사 하도급의 제한 등]

- ①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은 '도급인'에게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도급인으로부터 승인 받은 업체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관계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도급인"은 설치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 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도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확인 및 제1항의 "도급인"의 승인내용에 대한 이행과정을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하수급자에게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즉시 하수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통장사본, 입금내역 등)를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수급인"이

제출하지 아니하면 "도급인"은 다음 지급을 유보하고, 하수급자에게 지급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⑤ "수급인"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하도급 하여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재하도급 공사가 완료되는 경우 하수급인과 하도급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수급인"은 "도급인"의 승인을 득한 하도급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 하도급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단, "도급인"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제33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① "도급인"과 "수급인"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과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다.
- ② "도급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 ③ "도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자에게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자가 "도급인"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4조["도급인"의 계약해제 등]

- ①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수급인"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2.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3.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4.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수급인"에게 어음거래정지, 회사정리, 화의, 파산, 해산, 청산, 법정관리신청,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 신용상의 중대한 흠결이 발생하였을 경우
 6. "수급인"이 "도급인"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착공 후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을 임의 변경한 경우
 7. 기타 "수급인"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 기한을 정하여 최고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수급인"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단,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의 경우 "수급인"에게 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를 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수급인"은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당해 공사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15일 이내에 "수급인"은 조건 없이 "수급인"의 현장 인원을 완전철수 시키고, 모든 공사용 자재·장비 등을 현장에서 완전 반출하여 "도급인"에게 현장을 명도 해야 하고 공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도급인"이 제3자와 후속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그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일 수 매1일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인"은 해당 금액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다.
 - ④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급인"은 이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상계 할 수 있다.

제35조["수급인"의 계약해제 등]

- 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된 때
 2.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때
 3. "도급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3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처리]

- ①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은 지체 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 ②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계약 해지시점까지 이미 수행한 공사에 대한 공사대가 상당액을 수령한 경우, "도급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해지 대상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시키거나, "도급인"의 통제 하에 보관 폐기하여야 한다.

제37조["수급인"의 동시이행 항변권]

- ① "도급인"이 계약조건에 의한 선금과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수급인"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이를 지급치 않을 때에는 "수급인"은 공사중지기간을 정하여 "도급인"에게 통보하고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공사중지에 따른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시 공사기간에서 제외된다.
- ③ "도급인"은 제1항의 공사중지에 따른 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중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수급인"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제38조[채권양도]

- ① "수급인"은 본 계약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② "수급인"은 채권양도(채무인수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증기관(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서면동의를 얻어 "도급인"에게 제출하고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도급인"은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채권양도 승인요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수급인"과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손해배상책임]

- ① "수급인"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 관리를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도급인"은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수급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수급인"은 "수급인"의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의 시공 관리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 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④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도급인"이 제3자로부터 재판상 또는 재판 이외 청구 등을 당한 때에는 "수급인"은 신속히 "수급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제거 또는 해소하는 조치를 취하여 "도급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도급인"이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 ⑤ "도급인"은 "수급인"의 정당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수급인의 권리행사를 이유로 본 계약서상에 정해지지 않는 사항의 이행을 강제하거나, 본 계약서상의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하는 방법으로 보복조치를 하지 아니하며, 보복조치로 인하여 수급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 ⑥ "수급인"이 "도급인"의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의 사양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도급인"의 목적 달성을 하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제40조[민원]

- ① "수급인"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설 설치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시공 상의 민원사항(민형사상 법적 사항, 인적, 물적, 인접건물피해, 기타 민원 등)의 해결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 ② "수급인"은 민원 발생 시 이의 해결을 태만히 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도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1조[특허권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 3 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도급인"이 이와 관련하여 제 3 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경우 "수급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도급인"을 면책 시켜야 한다.

제 42 조[법령의 준수]

"수급인"은 본 계약 공사의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3 조["수급인"의 책임과 의무]

- ① "수급인"은 계약 또는 관련법규의 위반으로 형. 민사상의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시공과 관련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법규의 위반으로 사법당국의 제재를 받은 결과 사용승인이 지체되었을 경우에는 사법당국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 없는 "도급인"과의 본 계약 이전에 발생한 모든 채권, 채무와 공사상의 문제점(공사자재 정리 정돈 미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하등의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44조[관련 공사와의 협조]

"수급인"은 본 계약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인"의 직발주 공사 및 관련 공사와의 시공 또는 공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 관련 공사의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도급인" 또는 "도급인"의 "수급인"은 "수급인"의 현장관리에 적극 협조하며, "도급인"은 "도급인"의 직발주 공사업체와 "수급인"간의 이견 또는 분쟁 발생 시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제 45 조[제비용의 부담]

본 계약 공사의 대관청 관련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착공부터 준공 완료까지의 제반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지체 없이 행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단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상수도, 하수도 및 통신 인입 등 "수급인"의 계약범위를 벗어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대관업무를 수행하되 그 시설분담금은 "도급인"이 부담한다.

제46조[통지 등]

- ① 구두에 의한 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 ②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47조[분쟁의 해결]

-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관례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 ②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주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제48조[비밀누설 금지]

- ① "수급인"은 본 계약 및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정보, 영업비밀 등을 "도급인"의 동의 없이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으며, 이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지닌다.
- ② 만약, 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의 손해를 배상한다.

제49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서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이를 확인하고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50조[특약사항]

- ① "수급인"은 본 공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도급인 및 도급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수급인"의 업무 담당자들의 성명,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급인"의 업무 담당자들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받아 그 사본을 도급인에게 제출한다.
- ②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51조[기타사항]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고 조문해석에 의견이 있을 시는 특약에 따른다.

확 인 서

(주)에스에프에이는 (주)하림산업 함열식품1공장에서 발주하는 하림산업 함열1공장과 물류센터간 콘베어 연결시스템 설치 공사에 참여 하면서 아래 사항에 대한 이행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1. 본 계약 체결에 있어 견적조건, 특기사항, 설계도면, 공사개요, 계약일반조건, 현장설명 사항, 관계법령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여 계약내역서 및 공사도급계약을 작성한 것을 확인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본 계약을 체결 후 견적착오, 오산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단가 인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미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시공할 것을 확약한다.
3. 전체 건설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사 현장내에서의 작업(시공순서와 시공방법) 및 안전, 환경관리 등에 대하여 (주)하림산업 함열식품공장 공무팀의 관리하에 통제를 받기로 하며 철저히 관련 법률을 준수할 것을 확인한다.
4. 도급계약한 공사의 원인 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용전, 용수, 폐기물처리, 청소, 정리정돈에 대한 의무와 이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의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5. "수급인"은 본 공사가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견적서에 명시된 설치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본 공사가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유치권의 행사를 포기하며, 정산에 따른 공사대금만을 청구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7. 본 공사의 계약문서 및 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한다.

2023년 10월 30일

확인자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9길 25(영천동)
회 사 명 : (주)에스에프에이
대표이사 : 김 영 민 (인)

담당자(직급/성명) : (인)

(주)하림산업 귀하

안전관리 Work Scope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현장의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한다. 안전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 제14조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지정, 제15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및 안전보건협의회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 되도록 현장의 안전조직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2. "수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사전검토

가.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관련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나. 안전관리자의 임무수행능력 및 권한 보유 여부 검토

다. 시공계획과 연관된 안전계획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라.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

마.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계획의 수립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바. 안전관리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사. 현장 안전관리규정의 비치 여부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아. 표준안전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금지 여부

자. 시공자가 작성한 총체적 안전관리계획서(TSC ; Total Safety Control)를 검토한 후 "도급인"에 보고.

② 공사 중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時 계획변경 여부 확인

나. 안전보건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

다.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 확인

라.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

마.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확인

바.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확인

사.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확인

아.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확인

자.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차. 환경 안전 목표 및 세부 추진계획서 작성

3. "수급인"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 ①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 ②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 ③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 ④ 각종 사고보고
 - ⑤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 ⑥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수시로 점검.확인)

4. "수급인"은 착공시기, 주요 공정이 변할 때, 또는 잠재적인 위험이 있을 때 위험정보조사 및 위험성 평가를 작성하여 잠재적 위험을 관리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6. "수급인"은 주간단위로 최소 주1회이상 안전담당자와 함께 Safety Patrol 을 이행하며, Safety Check List 를 작성한다.

7. "수급인"은 Safety Check List 분석결과,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SCAR(Safety Corrective Action Request)에 기록, 발부한다.

8. "수급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건설사고조사 업무매뉴얼을 활용하여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